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별로 긴급처리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의 대상 정비(안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긴급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의뢰 우선심사(제1항제11호), 65세 이상인 사람 및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사람의 우선심사(제1항제12호가목 및 나목)를 삭제하고,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관련된 우선심사(제2항제1호 나목)의 근거법을 현행화함.

나.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안 제7조의2)

- 1) 개정된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개임 명령’을 ‘교체 명령’으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제1항제1호가목)
- 2) 개정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대상이 ‘특허거절결정된 출원’뿐만 아니라 ‘특허결정된 출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함(제1항제1호하목)
- 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중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서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1호너목 신설)

다. 특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19조)

특허공보에 개정된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항제4호 및 제3항제7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4.~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대리인의 개입**”을 “**대리인을 바꿀 것**”으로, “**개입된**”을 “**교체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를 “**특허**”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특허거절결정**”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 전에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분할출원**”을 “**분할출원, 분리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을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 제1호나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이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p> <p>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 style="margin-left: 20px;">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u>대리인의 개입을 명한 경우</u>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u>개입된</u> 날까지의 기간</p> <p style="margin-left: 20px;">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u>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u>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p>	<p>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 ----- ----- ----- ----- -----</p> <p>1. ----- ----- ----- -----</p> <p style="margin-left: 20px;">가. ----- ----- ----- ----- ----- ----- ----- ----- ----- ----- ----- -----</p> <p style="margin-left: 20px;">나. ----- ----- ----- ----- ----- ----- ----- ----- ----- ----- ----- -----</p>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 파. (생략)

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생략)

<신설>

다. ~ 파. (현행과 같음)

하.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거. (현행과 같음)

너.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 전에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너. ~ 어.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 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 10. (생략)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

날까지의 기간

더. ~ 저. (현행 너목부터 어목까지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
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
로 예상되는 사람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생략)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생략)

제19조(특허공보) ① (생략)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②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2. (현행과 같음)

제19조(특허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분할출원, 분리출원-----

5. ~ 9. (현행과 같음)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 10. (생략)

④·⑤ (생략)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

8. ~ 10.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153